

안산시고잔자폐아센터민간위탁동의안

의안 번호	94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년 2월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자폐증이 2000년부터 장애범주에 포함되어 장애로 인정되고 있으며, 자폐아동의 치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안산자폐아센터의 정원은 34명이나 대기인원이 현재 84명에 이르고 있고,
- 아동 1명의 교육기간이 36개월간 소요되어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이 너무 길며 자폐아동의 조기진단 및 치료가 늦어질 경우 영구장애로 고착되므로 자폐아치료센터 추가시설이 시급한 실정임.
- 따라서, 자폐아의 인지능력을 극대화하고 정상 아동과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자폐아동의 조기발견 및 치료교육을 실시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1. 위탁 시설명 : 안산시고잔자폐아센터(가칭)

2. 위탁운영 사업내용

- 자폐아동의 진단검사(지능검사, 성격검사등)
- 자폐아동의 치료
- 전문상담을 통한 자폐아동의 기능 강화
- 자폐아동 부모상담을 통한 가족역할 기능강화
- 자녀교육 사례 및 생활지도 방법등

□ 관계법규 : 별첨

-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
(장애인의 정의,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)
- 장애인복지법 제15조(장애발생예방)
- 장애인복지법 제16조(의료·재활치료)
-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(사무의 위임등)
- 안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

안산시고잔자폐아센터민간위탁동의안

안산시고잔자폐아센터를 안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민간위탁을 동의한다

1. 위탁 시설명 : 안산시고잔자폐아센터(가칭)

2. 위탁운영 사업내용

- 자폐아동의 진단검사(지능검사, 성격검사등)
- 자폐아동의 치료
- 전문상담을 통한 자폐아동의 기능 강화
- 자폐아동 부모상담을 통한 가족역할 기능강화
- 자녀교육 사례 및 생활지도 방법등

관 계 법령 발췌

□ 장애인복지법 제2조(장애인의 정의)

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외부신체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.
2.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

□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(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)

①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”라 함은 별표 1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.

[별표1] 발달장애인(發達障礙人)

소아기 자폐증,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

□ 장애인복지법 제15조(장애발생예방)

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,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의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장애인복지법 제16조(의료·재활치료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·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제95조(사무의 위임등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□ 안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4조

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-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경기도자치위임사무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시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④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【참 고 사 항】

□ 고잔자폐아센터 현황(예정)

○ 위 치 : 고잔동 533-2번지 석탑프라자 5층(504, 505호)

○ 면 적 : 81.77평(전용면적 45.72평)

○ 사 업 비 : 192,940천원

○ 임대보증금 : 163,540천원(시비)

※ 노동부 인력은행 임차면적 168평, 임대보증금 300,000천원 중

일부대체

○ 시설비 : 15,000천원(동화상시스템 : 한국인지과학연구소 부담)

○ 운영비 : 14,400천원(월1,200천원 : 한국인지과학연구소 부담)

○ 교육치료대상 : 만 2세~6세 취학전 아동

○ 운 영

○ 전문기관 위탁 : 한국인지과학연구소 (소장 여문환)

- 안산시 : 장소제공

- 연구소 : 시설장비 및 운영비 부담

○ 운영위원회 구성 : 7명(안산시2, 연구소2, 학부모3)

○ 위탁사업비 보조 : 시설의 임차 보증금이외에 운영비 보조 없음

○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수탁자가 관리비 및 운영비 일체를 자부담 운영

※ 운영경비의 70%는 수익자(학부모)가 부담하고, 30%는 연구소 지원

□ 늘푸른나무 자폐아센터 현황

○ 소재지 : 본오동 1130번지 장수노인정 2층

○ 규 모 : 131.64m²(39.8평)

○ 운영자 : 한국인지과학연구소(소장 여문환)

○ 교육과정 : 36개월

○ 기본과정 : 12개월

○ 본 과정 : 24개월

○ 교육정원 : 34명

○ 진단 및 대기인원 : 84명 (2001. 2월 현재)

□ 자폐(발달장애)증의 정의 및 등급기준

- 발달장애(發達障礙:자폐증)인 :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
소아기 자폐증,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
- 장애등급 기준 :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
 - 제1급
ICD-10(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, 10th Version)의 진단 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(자폐증)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,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,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
 - 제2급
ICD-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(자폐증)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,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,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
 - 제3급
제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,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